

憲法分科討議

司會朴 一 慶*

憲法分科의 討議는 理論的인 面에서는 거의 없었고 回顧와 學界의 現況정도에 그쳤다. 第二共和國의 崩壞原因에 대해 文鴻柱 博士는 憲法에서의 無限한 自由權 規定과 民主黨의 內紛으로 인한 國會內的 安定勢力의 不在라는 두가지 要因이 複合적으로 作用한 것으로 보았다.

또 文博士는, 大統領制야말로 약한 政府形態이고 議員內閣制는 兩大政黨에 基礎를 두면 오히려 강한 政府形態인 데도 不拘하고 第三共和國의 政府形態에 대한 當時의 國家輿論이 그 反對가 된 것은, 李博士의 大統領制가 순수한 大統領制가 아니고 이른바 新大統領制였으며 張博士의 議員內閣制가 兩大政黨에 基礎를 두지 못한 議員內閣制였다는 데 基因한다고 하였다.

그 밖에 學界의 動向에 관하여 프랑스 憲法을 專攻한 學者의 必要性이 얘기 되었으며, 아울러 研究의 專門化 내지 細分化, 共同研究 등이 學論되었다. 또 判例集의 必要性이 論議되어 서울大 法學研究所의 「判例教材」시리즈・「判例回顧」가 소개되었고 全國 各大學의 資料分擔蒐集案 등이 나오기도 하였다.

또 行政法 專攻의 立場에서 憲法學에서의 많은 도움이 必要한데 現實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리고 大學內的 問題로서 學點과 관련하여 불 때 憲法을 어느 정도로 理解하고 어느 정도로 講義해야 할 것인가의 問題도 提起되었으며, 기타 教授方法問題, 考試出題方法問題, 出版・研究을 위한 財政問題, 國費留學生制度의 問題 등이 學論되었다.

* 明知大學 學長